#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흐름도



## ▶ 꼭 지켜주세요!

- → 현장실습생 실무교육 투입 전 입문교육 필수 기업에 대한 기본 정보, 직무 소개, 의무교육 (산업안전보건교육, 개인정보보호교육,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,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,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) 등
- → 현장실습 시간 준수 1일 7시간, 주 35시간 이내 (단, 당사자 서면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, 1주일에 5시간 한도 연장실습 가능)
- → 야간실습 및 휴일 실습 불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실습 불가, 주 2회 휴일 보장

# 기업현장교사 자격 및 역할

## 

- → 기업현장교사 자격요건(아래 자격요건을 한 가지 이상 충족)
- (전문)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로서 해당·분야 1년 이상 훈련 지도 유경험자
- 정부 출연기관 등 연구기관 또는 기업 부설 연구소에서 해당 분야 연구경력자
- 법률에 따른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
- 해당 분야 1년 이상의 실무경력자
- →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금
- 현장실습생 수에 따라 1일 30,000원~35,000원의 실습지도 수당을 최대 210만 원 한도로 지급함
-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www.kosaf.go.kr)에서 기업현장교사가 직접 신청
- 기업현장교육 지원금 신청 시 현장실습 기업 대표의 직인이 날인된 '기업 현장교사 자격 확인서' 제출(기업현장교사 → 한국장학재단)







2025년 개정



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공통매뉴얼



기업용







# 학습중심 현장실습

# 교육과정 운영형태 계약 운영기간 실무과목연계 OJT (학습중심) 취업 준비과정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연중 최대 3개월 (실습일 기준 60일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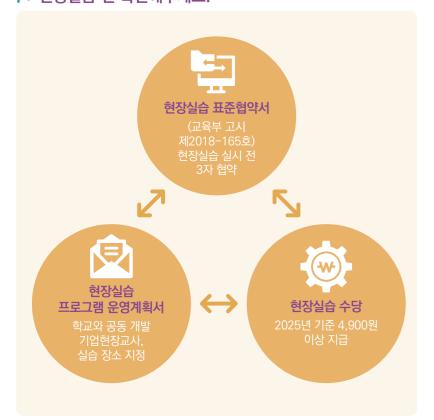
- % 시·도교육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개월(실습일 기준 60일)이상 가능(승인 필수)
- ※ 현장실습표준협약과 근로계약은 동시 체결 불가



현장실습생은 근로자가 아닌 학생입니다



# ◀ 현장실습 전 확인해주세요!



#### ※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 책임자에게 5만원 이내 수당이 지급 됩니다.

#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권익을 지켜주세요! (적용 법령)

## ◀ 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의2(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)

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훈련생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, 제29조,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,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, 제63조, 제114조제3항, 제131조, 제138조제1항, 제140조, 제155조부터 제157조까지를 준용함("사업주"는 "현장실습산업체의 장"으로, "근로"는 "현장실습"으로, "근로자"는 "현장실습생").

## 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근로기준법 추가 준용사항

- 1. 일부개정('23.3.30.) 사항 「근로기준법」제7조(강제근로의 금지), 제8조(폭행의 금지), 제9조(중간착취의 배제), 제10조(공민권 행사의 보장), 제36조(금품청산), 제76조의2 (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), 제76조의3(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), 제77조(기능습득자의 보호) 및 각조항 위반자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부과 조항\*이 추가 준용됨
- \* 제107조, 제109조제1항, 제110조제1호, 제114조제1호, 제116조
- 2. 일부개정('23.3.30.) 사항 준용되는 「근로기준법」 제76조의3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(학교장) 또는 직업교육훈련교원(교사)은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같은 법 제76조의3제2항에 따른 조사를 요구할 수 있음.

# ◀ 「직업교육훈련 촉진법」제24조에 따른「근로기준법」 준용 조항 해설

| 구분 | 준용 조문                   | 요약   | 의미·해석   | 비고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|----|
| 본문 | 제54조<br>(휴게)            | 현장실습 4시간<br>마다 30분 이상<br>현장실습 도중에<br>휴게시간 부여     | 계속 실습으로부터 현장실습생의 건강을<br>보호하기 위해 현장실습 시간 4시간 마다<br>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현장실습 도중에<br>부여하도록 하고 있고, 휴게시간은 자유롭게<br>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보장되어야 함. |    |
|    | 제65조<br>(사용금지)          | 18세 미만자<br>유해위험 사업<br>사용 금지                      |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도덕상 또는 보건 상<br>유해위험 사업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한<br>사업에서는 18세 미만자를 고용하지 못함.   |    |
|    | 제72조<br>(갱내근로의 금지)      | 18세 미만자 갱내<br>근로 금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갱내는 작업 환경이 열악하고 위험하며,<br>호흡기 질환 발생 가능성 등이 높은<br>장소이므로 18세 미만자 현장실습을 금지함.  |    |
|    | 제73조<br>(생리휴가)          | 여성 현장실습생<br>청구 시 월 1일<br>생리휴가 부여                 | 여성 현장실습생의 신체적, 정신적 건강을<br>보호하기 위해서 월 1회 청구하는 경우에<br>무급으로 휴가를 사용하도록 허용함.   |    |
|    | 제7조<br>(강제근로의 금지)       | 현장실습생<br>자유의사에 반하는<br>실습 강요 금지                   | 경제적으로 힘의 우위에 있는<br>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폭행, 협박, 감금<br>등 일체의 수단을 이용하여 현장실습생에게<br>실습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함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    | 제8조<br>(폭행의 금지)         | 신체에 대한<br>유형력 행사로써<br>현장실습생에 대한<br>폭행 금지         | 현장실습생의 인격권 보호를 위하여 사고의<br>발생이나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신체에 대한<br>유형력 행사는 금지됨.  |    |
|    | 제9조<br>(중간착취의 배제)       | 제3자가 현장실습<br>계약 관계에<br>개입하여 이익을<br>취득하는 행위<br>금지 | 직업안정법, 파견법 등 다른 법률에 근거<br>없이는 현장실습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<br>영리로 타인의 현장실습이나 현장실습 계약<br>관계 존속에 개입함으로써 이익을 취득하지<br>못하도록 함.           |    |
|    | 제10조<br>(공민권 행사의<br>보장) | 현장실습생이<br>공적 활동을<br>수행할 수 있는<br>시간을 보장           | 현장실습생이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<br>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<br>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근로시간 중이라도<br>승인하여야 하고, 다만 시간을 변경하는 것은<br>허용됨.              |    |

# ◀ 「직업교육훈련 촉진법」제24조에 따른 「근로기준법」 준용 조항 해설

| 구분 | 준용 조문                          | 요약  | 의미·해석   | 비고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--|
| 본문 | 제36조<br>(금품청산)                 | 현장실습생의<br>실습중료 또는<br>시망 시 14일<br>이내에 일체의<br>금품을 청산,<br>지급할 의무         | 사망 또는 현장실습 종료와 같은<br>현장실습 계약 종료사유가 발생한<br>경우 현장실습 산업체의 장은<br>지급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품(현장<br>실습 지원금 등)을 청산하여 14일<br>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고, 지급기일은<br>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음.  |  |
|    | 제76조의2<br>(직장 내<br>괴롭힘의 금지)    | 직장 내<br>괴롭힘 금지  | 현장실습 산업체 내에서의 지위 또는<br>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<br>적정범위를 넘어 현장실습생에게<br>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실습<br>환경을 악회시키는 행위(이하 "직장 내<br>괴롭힘"이라 한다)를 하여서는 안됨   |  |
|    | 제76조의3<br>(직장 내 괴롭힘<br>발생시 조치) | 현장실습산업체의<br>장의 조사 및<br>기타 조치 의무와<br>괴롭힘 조사 등에<br>참여한 자에 대한<br>비밀유지 의무 | 누구든지 현장실습 산업체 내 괴롭힘을<br>신고할 수 있고, 현장실습산업체의<br>장은 신고를 접수받거나 인지한<br>경우에는 지체없이 조사를 실시하여야<br>하다, 피해 현장실습생에 대해서는<br>괴롭힘 사실 확인 전, 후를 거쳐 적절한<br>조치를 실시하고, 괴롭힘 신고 등을<br>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<br>관련자들은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됨. |  |
|    | 제77조<br>(기능습득자의<br>보호)         | 기능 습득을<br>목적으로 근로자를<br>혹사하거나<br>관계없는 업무<br>종사 금지                      | 도제, 양성공, 수습 등 기능 습득을<br>목적으로 현장실습생에게 열악한<br>실습조건으로 사용하면서 혹사하거나<br>기능 습득과 관계없는 가사 또는 잡무<br>등을 지시하는 것을 금지함.   |  |
|    | 제107조<br>(벌칙)                  | 5년 이하의 징역 또는<br>5천만원 이하 벌금  | 강제근로, 폭행, 중간착취 발생시<br>위반자 제재  | 제7조, 제8조,<br>제9조 위반 시 적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| 제109조제1항<br>(벌칙)               | 3년 이하의<br>징역 또는 3천만원<br>이하의 벌금  | 사용금지 위반, 갱내근로 실시 및<br>금품청산 위반, 직장 내 괴롭힘으로<br>인한 불리한 처우시 제재  | 제65조 및 제72조 위반<br>시 적용(기존)<br>제36조, 제76조의3제6<br>항 위반시 적용 |
| 벌칙 | 제110조제1호<br>(벌칙)               | 2년 이하의 징역<br>또는 2천만원 이하의<br>벌금  | 휴게시간 미부여 및 공민권 행사<br>미보장 시 제재   | 제54조 위반 시 적용<br>(기존)<br>제10조 위반 시 적용                     |
|    | 제114조제1호<br>(벌칙)               | 500만원<br>이하의 벌금   | 생리휴가 미보장 및 기능습득자 보호<br>위반시 제재   | 제73조 위반시 적용<br>(기존)<br>제77조 위반시 적용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| 제116조제1항<br>(과태료)              | 1천만원<br>이하의 과태료   | 사용자(일정 범위 내 친족 포함)가 직장<br>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의 제재  | 제76조의2<br>위반시 적용   |
|    | 제116조제2항<br>(과태료)              | 500만원<br>이하의 과태료  | 사업주의 괴롭힘 조사실시<br>의무(제2항), 괴롭힘 확인 시 조치<br>의무(제5항) 및 조사 관여자 등의<br>비밀유지 의무(제7항) 위반 시 제재  | 제76조의3제2항·제4항·<br>제5항·제7항 위반 시<br>적용                     |

## ◀「직업교육훈련 촉진법」제26조, 제27조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

| 구분  | 준용 조문         | 요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미·해석  | 비고   |
|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벌칙  | 제26조<br>(벌칙)  | 2년 이하의 징역<br>또는 2천만원<br>이하의 벌금 | 현장실습 7시간(연장 동의시<br>8시간) 초과 실습 또는 정해진<br>시간(야간실습 등) 외 실습 제재   |  |
| 과태료 | 제27조<br>(과태료) | 500만원 이하의<br>과태료               | 현장실습 계약 미체결,<br>표준협약서 미사용,<br>현장실습 기간, 방법,<br>담당자 배치, 현장실습 수당,<br>안전·보건상의 조치, 현장실습<br>내용이 변경절차 등 현장실습<br>협약서 사항 미준수 시 제재 | (과태료 부가 권한 위임)<br>시·도교육감  • 제27조제1항제1호(현장실습 계약 미체결, 표준협약서 미사용)에 따른 과태료  • 제27조제1항제2호 가목부터 다목 (현장실습 기간, 방법, 담당자 배치) 까지 및 바목(현장실습 내용의 변경 절차)에 따른 과태료 고용노동지청장  • 제27조제1항제2호라목 (현장실습 수당) 및 마목 (안전-보건상의 조치) |